

2005년 하반기부터
달라지는 주요 산림정책

2005. 6.

산 림 정

“녹색 숲을 품안에, 파란 꿈을 후세에”

목 차

1. 수목원 조성을 위한 토지 등의 수용 또는 사용	3
2. 국립수목원 완충지역 안의 토지 등의 매수	3
3. 청원산림보호직원 배치권자 확대	3
4. 임산물 품질인증 제도 개선	4
5. 독립가 및 임업후계자 요건 완화	4
6. 소나무재선충병 방제대책 강화	5
7. 백두대간 보호지역 주민 지원 강화	7

2005년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주요 산림정책

번호	제 목	종 전	달라지는 내용	관련법규 및 시행 일	변경사유 및 기대효과	소관부서
1	수목원 조성을 위한 토지 등의 수용 또는 사용	<신설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수목원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그 대상토지와 그 토지에 정착된 물건에 대한 소유권 및 그 밖의 권리를 수용 또는 사용할 수 있음.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수목원조성 및 진흥에관한법률 제8조의2 (2005. 7)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원활한 수목원 조성 사업 추진 	산림보호과 ☎ (042) 481-4248
2	국립수목원 완충 지역 안의 토지 등의 매수	<신설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산림청장은 국립수목원 완충 지역을 보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완충지역 안의 토지 등을 그 소유자와 협의하여 매수할 수 있고, 매각을 희망하는 소유자도 국가에 매수청구를 할 수 있음.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수목원조성 및 진흥에관한법률 제19조의2 및 제19조의3 (2005. 7)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완충지역안의 수목유전 자원을 효과적으로 보호·관리하고 사유 재산권 보호 	산림보호과 ☎ (042) 481-4248
3	청원산림보호 직원 배치권자 확대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배치권자 - 특별시장·광역시장·도지사, 지방산림 관리청장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배치권자에 시장·군수·자치구의 구청장, 국립산림과학원장 추가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청원산림보호 직원의 배치에 관한법률 제2조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청원산림보호직원 운영의 효율성 제고 	산림보호과 ☎ (042) 481-4241

번호	제 목	종 전	달라지는 내용	관련법규 및 시행일	변경사유 및 기대효과	소관부서
4	임산물 품질인증 제도 개선	<신설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임산물품질인증을 신청하는 자는 농림부장관이 정하는 인증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함. ○ 산림청 : 접수, 인증 ○ 국립산림과학원 : 시험, 사후관리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임업 및 산촌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 (2005. 7) ○ 국립산림과학원으로 일원화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수의자부담원칙 및 타분야와의 형평성 유지 ○ 행정의 간소화로 민원인의 편의 도모 	임산물 이용과 ☎ (042) 481-4206 ,
5	독립가 및 임업 후계자 지원 완화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자영독립가 : 20ha이상 ○ 법인독립가: 500ha이상 ○ 임업후계자 : 5ha이상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자영독립가 : 15ha이상 ○ 법인독립가 : 400ha이상 ○ 임업후계자 : 3ha이상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임업 및 산촌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2, 동법 시행규칙 제2조의2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산림 경영 인율 육성하여 사유 릴 경영 활성화 도모 	경영지원과 ☎ (042) 481-4191

번호	제 목	종 전	달라지는 내용	관련법규 및 시행일	변경사유 및 기대효과	소관부서
6	소나무재선충병 방제대책 강화	<신설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재선충병 구제·예방을 위한 산림소유자 의무부과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재선충병이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을 때에는 산림소유자가 구제·예방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비용을 지원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소나무재선충병 방제 특별법 제3조 (2005. 9)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산림소유자가 우선적으로 방제작업을 추진하여 확산을 사전에 방지 	산림보호 지원 팀  (042) 481-4077

번호	제 목	종 전	달라지는 내용	관련법규 및 시행일	변경사유 및 기대효과	소관부서
		<신설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소나무재선충병 방제명령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감염목 또는 감염우려목의 소유자 등에 대하여 당해 임목의 벌채명령이나 양도·이동 금지 등의 방제조치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소나무재선충병 방제 특별법 제8조 (2005. 9)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피해목의 신속한 제거를 통해 확산을 방지 	산림보호 지원 팀 ☎ (042) 481-4077
		<신설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반출금지구역 지정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재선충병의 방제 및 확산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피해지역에 대하여 읍·면·동 단위로 소나무류 반출금지구역을 지정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소나무재선충병 방제 특별법 제9조 (2005. 9)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피해지역에 대한 엄격한 이동제한 조치로 인근 지역으로의 확산 방지 	"
		<신설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감염목의 이동·판매·이용 제한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감염된 임목·원목은 이동·판매·이용이 금지됨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제10조 (2005. 9)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재선충병의 확산 저지 	"
		<신설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피해지역의 소나무류 조림·육림 금지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피해지역으로부터 일정거리 이내의 지역에서는 소나무류의 조림 및 육림을 금지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소나무재선충병 방제 특별법 제12조 (2005. 9)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재선충병의 추가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고 확산을 방지 	"

번호	제 목	종 전	달라지는 내용	관련법규 및 시행일	변경사유 및 기대효과	소관부서
7	백두대간 보호지역 주민 지원 강화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보호지역 안에서의 허용행위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핵심구역> - 원두막, 비닐하우스 등 지역주민의 생활과 관계되는 시설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의 설치 <완충구역> - 신설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보호지역안에서의 허용행위 확대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핵심구역> - 농가주택, 농림축산시설 등 지역주민의 생활과 관계되는 시설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의 설치 <완충구역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백두대간 보호를 위한 홍보 · 교육시설의 설치 - 「장사 등에 관한 법률」에 의한 신고를 한 개인묘지, 개인 또는 가족 납골묘의 설치(단, 산지외의 토지에 한함)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백두대간보호에 관한법률 제7조 (2005. 12)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보호지역 지정으로 인한 지역주민의 불편을 최소화 	<p>백두대간 보전과  (042) 481-4295</p>

번호	제 목	종 전	달라지는 내용	관련법규 및 시행일	변경사유 및 기대효과	소관부서
		<p><신 설>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보호지역 안의 토지소유자가 산림청장에게 해당 토지의 매수 청구 가능 <p><신 설>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보호지역에 거주하는 주민 또는 토지소유자에 대한 지원 강화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농림축산업 관련 시설설치 및 유기영농 등 소득증대사업 지원 - 자연환경보전·이용시설 설치 사업 지원 - 백두대간의 보호·육성을 위하여 벌채를 하지 아니하는 자의 소득 감소분 지원 등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백두대간보호에 관한법률 제10조의2 (2005. 12)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보호지역 안에 있는 토지 소유자의 사유 재산권 보호 	백두대간 보전과 ☎ (042) 481-4295	



<http://www.forest.go.kr>